

변경대비표(ETF)

1. 대상 펀드

no.	펀드명	펀드명	예금자보호 문구
1	미래에셋 TIGER 글로벌 BBIG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○	-
2	미래에셋 TIGER 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○
3	미래에셋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○
4	미래에셋 TIGERFn 반도체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○
5	미래에셋 TIGER 미국캐시카우 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○

2. 변경 사항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4년 11월 15일 (금)

4. 변경 내용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TIGER글로벌BBI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미래에셋TIGER글로벌 이노베이션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- 2)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<요약정보> 위험등급 (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
<요약정보> 투자자 유의사항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

	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주요투자 위험	<p><원본손실위험></p> <p>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며,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</p>	<p><원본손실위험></p> <p>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며,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p>
제 2 부. 10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	<p>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/p> <p>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/p> <p>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p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